

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346호

나. 제 안 자 : 경만선 의원 외 1명 (찬성의원 9명)

다. 제안일자 : 2019년 1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31일

## 2. 제안이유

-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으로 법제처 등의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마련하여 법률 전문가 중심의 문화를 시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조례의 규정도 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,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, 본 입안 취지 또한 제명의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하도록 함  
(안 제2조~제55조).

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조례안의 개요

- 조례안은 한글 어문 규정에 따른 정확한 띄어쓰기를 제명에 일괄 반영하여,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자치법규 일괄개정

-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조문 변경, 관계 법령 개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모두 조례에 반영하기 어려울 때는, 개정취지가 같거나 비교적 사소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을 통해 입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음.
- 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일괄정비안의 목적에 부합하나, 최근 일괄정비안의 발의 건수가 증대되는 추세인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 고유의 심사 권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## 다. 조례안의 일괄정비 사안

- 조례안은 각 조의 조례 제명을 “조례” 앞에서 반드시 띄어 쓰도록 일괄개정하려는 것임.
  - “지원조례” → “지원∨조례”, “기본조례” → “기본∨조례” 등
-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,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음.
- 또한 법제처의 ‘법령이름 띄어쓰기 기준’ 상 법령 이름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, 명사(복합명사)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으며, ‘기본법’, ‘특별법’, ‘특례법’ 등은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음[참고자료1].
- 현재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는 ‘법령이름 띄어쓰기 기준’을 참고하여 적용할 뿐,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.
- 동일한 문구의 조례 제명에도 다른 띄어쓰기가 다수 존재해<sup>1)</sup> 혼란을 초래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,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,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임.
- 서울시 또한 조례안에 대해 제명의 용어나 의미가 변경되지 않아

1) 「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」 등

이에 따른 혼란 발생 소지가 적다고 판단, 일괄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이밖에 “조례” 앞 띄어쓰기 외 안 제25조, 제30조, 제43조,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쓰고자 하는 것으로, 어문 규정의 일반 원칙과 시민들의 가독성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안 제25조	서울특별시 <u>수도시설이설</u> 등 원인자부담금 <u>징수조례</u>	서울특별시 <u>수도시설 이설</u> 등 원인자부담금 <u>징수 조례</u>
안 제30조	서울특별시 <u>시세감면조례</u>	서울특별시 <u>시세 감면 조례</u>
안 제43조	서울특별시 <u>주거기본조례</u>	서울특별시 <u>주거 기본 조례</u>
안 제49조	서울특별시 <u>택시기본 조례</u>	서울특별시 <u>택시 기본 조례</u>

- 한편 조례안을 통해 수정되는 54개의 조례 제명 중 일부는 타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, 인용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, 이번 일괄정비에 일부 반영하지 못한 조례 제명을 입법 취지에 맞춰 함께 정비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나래	02-2180-8057

## [참고자료1] 법령이름 띄어쓰기 기준

- 단어별로 띄어 쓴다.

예시) 박물관 ∨ 및 ∨ 미술관 ∨ 진흥법

- 명사(복합명사)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이름은 최대 8음절<sup>2)</sup>까지 붙여 쓸 수 있다.

-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, 단체 또는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.

예시)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, 공공자금관리기금법

- ‘시행령’, ‘시행규칙’, ‘규정’ 등 하위법령임을 나타내는 명칭은 띄어 쓴다.

예시) 아동복지법 ∨ 시행령

- ‘기본법’, ‘특별법’, ‘특례법’ 등 법률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.

예시) 고용정책 ∨ 기본법

- 법령 이름 띄어쓰기 권고안(작성 기준일: 2017. 12. 1.)

- 법령 이름이 아직 한글화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법령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아래 ‘권고안’으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‘권고안’과 같이 인용한다.

- 법령 이름이 아직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었더라도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는 법령 이름은 그 법령을 일부개정하거나 전부개정할 때 아래 ‘권고안’에 따라 법령 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한다.

2)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

## [참고자료2] 일괄개정안 조항별 제명 인용 조례 현황

구분	제명	인용 조례
안 제4조	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」	<p>「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」 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(생략)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『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』 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또는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</p>
		<p>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 제7조(적용범위) 2. 「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」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</p>
안 제5조	「서울특별시 경관조례」	<p>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제6조 (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)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경관조례」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 및 도시디자인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위원회의 설치) 4. 「서울특별시 경관조례」 제25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(단, 야간 경관 시설은 제외)</p>
안 제7조	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」	<p>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④ 제1항에 따라 해외 도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, 「재외공무원 복무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등을 준용한다.</p>
안 제12조	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	<p>「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」 제9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⑤ 사용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의 예에 따른다.</p>

		<p>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용료 감면 등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 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, 대부료,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를 준용하여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」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점용료 등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·징수한다. 1. 점용료 :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에 따라 산정된 금액 2. 대부료 가. ~나.(생략)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「도로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를, 대부료의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</p>
<p>안 제16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40조(무형문화재의 교육지원 등) 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라 시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강좌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		<p>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)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 5.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 제13조에 따른 문화 시민도시종합계획</p> <p>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) 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문화 도시 기본조례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안 제17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)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 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21조에 따른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심의·자문에 따른다.</p>
<p>안 제22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」 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중소·벤처기업 등 지원) 시장은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·설립할 수 있다. 3.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16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,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</p>



		<p>「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19조(산업단지 지원)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·외의 시설 조성·확충 지원 시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에 따른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, 제47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,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
<p>안 제25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⑥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, 징수방법, 이의신청은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에 따른다. 이 경우 "수도공사"는 "급수공사"로 "수도시설"은 "재처리시설"로 본다.</p> <p>제47조(준용) 이 조례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에 있어,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
<p>안 제26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」 제9조(다른 조례의 적용)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7조(준용) 이 조례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에 있어,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

		<p>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 제4조(부담금 산정기준)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.</p> <p>2.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산정은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별표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.</p> <hr/> <p>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9조(관리) 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,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(이하 "수도조례"라 한다)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.</p> <hr/> <p>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1조(사용개시 등의 신고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·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p>1.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</p> <p>제23조(사용료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
안 제27조	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」	<p>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수수료 청구 및 납부)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(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)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제36조에 따른 정정·삭제의 요구,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(이하 "열람 등 요구"라 한다)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」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.</p>

		<p>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」 제3조(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" 라 한다)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(이하 "계기"라 한다)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.</p> <p>4. 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」에 의한 수수료</p>
		<p>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 제6조(비용의 부담)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,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<u>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</u>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
		<p>「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9조(수수료)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 및 환급절차는 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</p>
<p>안 제28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」</p>	<p>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」 제7조(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)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은 각 호와 같다.</p> <p>3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「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」에 따른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</p> <p>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③ (생략)</p> <p>5. 「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」에 따른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</p>

<p>안 제30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) ① 우수건축 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제26조(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)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(부속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」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14조(시세 등의 감면)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,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, 수수료,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.</p>
<p>안 제33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제16조(아동 참여위원회 등)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인권조례」 제50조에 따른 어린이·청소년참여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실태조사)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인권조례」 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권실태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. (생략)</p> <p>「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4. "청소년참여예산"이란 청소년이 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조례」 제24조제7항에 따른 권리에 따라 참여한 예산을 말한다.</p>
<p>안 제36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」 제10조(외국인투자기업 지원)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p>

		<p>「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외국인투자기업 지원)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p>
안 제38조	「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」	<p>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)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 4. 「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」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</p>
안 제42조	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	<p>「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.  제6조(자문단 등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.</p>
		<p>「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
안 제43조	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	<p>「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은 각 호와 같다. 4.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에 따른 주거복지기본계획  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③ (생략) 6.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에 따른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</p>

		<p>「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주거실태조사)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」 제11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<u>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</u>에 따른다.</p>
<p>안 제44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48조(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) ①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관하여는 「주차장법」·같은 법 시행령·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「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」 제3조(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) (생략) 2.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"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"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(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의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</p>

		<p>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7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</p>
		<p>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10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)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21조제2항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.</p>
		<p>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)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25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.</p>
		<p>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
		<p>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
안 제45조	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	「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사무기구와 소속 직원)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(이하 "감사담당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두며,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에 따른다.
		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)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(이하 "감사담당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두며,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에 따른다.
		「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」 제6조(직원의 정원)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
		「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기구·정원의 조정) ① 기관장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의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렬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기구 및 직렬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안 제46조	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	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) ② (생략) 2. 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
안 제47조	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」	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 제8조(설치 및 기능) (생략) 6. 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」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안 제48조	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」	「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청년공간의 사용 등)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



<p>안 제52조</p>	<p>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 (생략) 1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른 본청·직속기관 및 사업소</p>
		<p>「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,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·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(tbs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		<p>「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른 본청·직속기관 및 사업소</p>
		<p>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0조(도시계획시설의 관리)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.</p>
		<p>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,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른 '도시재생본부'로 한다.</p>

		<p>「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수수료의 면제)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검사·시험을 의뢰하는 경우</p> <p>「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」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20조에 따른 소방재난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36조·제39조·제43조·제46조·제49조에 따른 소관사무</p> <p>「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기구·정원의 조정) ① 기관장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의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렬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기구 및 직렬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
<p>안 제53조</p>	<p>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47조(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)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」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 설계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할 경우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9조의2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.</p>